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22
----------	------

발의연월일 : 2024. 11. 4.

발의자 : 서영교 · 추미애 · 박홍배
임오경 · 박희승 · 허영
박균택 · 강유정 · 이건태
이수진 · 진선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의뢰인이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한 상담내용 및 이에 대한 변호사의 조언 내용이 비밀로 보장되어야 함.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유불리를 불문하고 진실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만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충분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

그러나 현행 「변호사법」, 「형법」 등은 변호사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를 공개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할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 · 수색하여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이메일, 문서 등의 의사교환 내용을 수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더라도 변호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실정임.

이와 달리 미국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구별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은 비밀유지와 관련하여 이를 변호사의 의무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권리로서 보호하고 있으며, 영국도 보통법에 따라 변호사 특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나 의뢰인이 변호사의 범률 서비스를 범죄를 행하거나 방조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및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거나 의뢰인에게 전달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절차 등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또한 의뢰인의 승낙을 강요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승낙을 강요한 자를 처벌하는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비밀유지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13조제3호의2 신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등”을 “및 비밀유지권”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 및 공개 또는 제출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의뢰인의 비밀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서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2. 변호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거나 의뢰인에게 전달한 서류 및 전자적 형태로 작성 · 관리되는 일체의 자료 및 물건

3. 변호사가 의뢰받은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 및 전자적 형태로 작성 · 관리되는 일체의 자료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

2.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언 또는 기타 법률서비스를 범죄를 행하거나 방조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3.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서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 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한 서류나 자료 등은 재판 또는 행정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

제11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 승낙을 강요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의2, 제113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무와 관련되어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등에 대하여 공개,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비밀유지의무 <u>등</u>)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u>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u>.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u><신 설></u></p>	<p>제26조(비밀유지의무 <u>및 비밀유지권</u>) ----- -----<u>공개하지 아니할</u> 의무 및 공개 또는 제출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p> <p><u>제26조의2(의뢰인의 비밀 보호)</u></p> <p><u>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u>1.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서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u></p> <p><u>2. 변호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거나 의뢰인에게 전달한 서류 및 전자적 형태로 작성 · 관리되는 일체의 자료 및 물건</u></p> <p><u>3. 변호사가 의뢰받은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 및 전자적 형태로 작성 · 관리되는 일체의 자료</u></p>

	<p><u>② 제1항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u>1.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u></p> <p><u>2.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언 또는 기타 법률서비스를 범죄를 행하거나 방조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u></p> <p><u>3.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서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u></p> <p><u>③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한 서류나 자료 등은 재판 또는 행정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u></p> <p>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3. (생 략) <u><신 설></u></p> <p>4. ~ 7. (생 략)</p> <p>제113조(벌칙)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3의2.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 승낙을 강요한 자</u></p> <p>4. ~ 7. (현행과 같음)</p>
--	--